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20.10.05 (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전용현

### 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P11교각 상부는 부식된 철판 등의 자재가 낙하되어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제거 조치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1  
(낙하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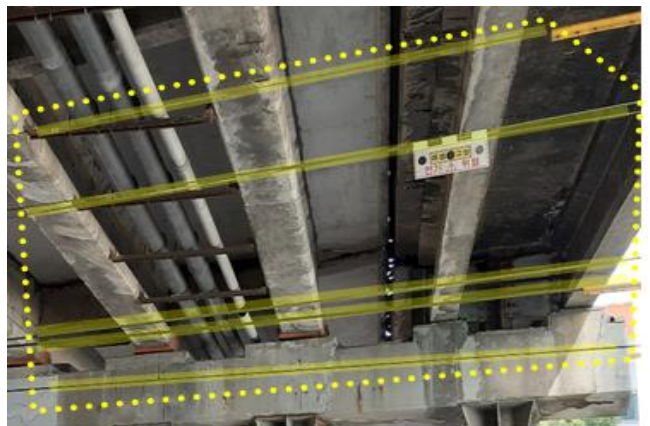


### 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철도 횡단부의 경우 거더와 고압선의 이격이 크지 않으니 향후 철거 등의 작업 시 사전에 고압선에 보호커버 등을 설치하거나 단전 조치 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수립 시 반영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37  
(정전작업시 안전작업기준)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38  
(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시 안전작업기준)

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교량 상부구조 철거 공사를 EMS공법에서 일반 크레인을 활용한 철거공법으로 변경이 결정될 경우 아래 사항을 시공계획에 반영하여 안전을 확보 후 작업하기 바람.

① E.M.S(Eco Mega lifting System)가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철거공사를 시행할 경우 EMS공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사전에 해체순서, 해체 시 유의사항,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고 상기사항을 근로자 교육 및 시뮬레이션 수행 후 작업 요망.

② 또한 E.M.S해체 시 하부교각에 부착·매설되어 있는 각종 가설구조물 해체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요망.

③ 아울러 E.M.S 공법구간 중 외측의 독립된 거더는 횡방향 충격 등에 의한 전도 및 낙하 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필요.

④ 상기 사항들을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반영 및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요망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)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철도 횡단부의 교각의 경우 향후 공용이 되면 여건상 점검 및 보수·보강이 어려운 바, 철거 작업 시 노후도 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 보수·보강 요망.

